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92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한병도·김종민·장철민

김영진 · 임오경 · 김영배

민병덕 • 이해식 • 정일영

서미화 · 강유정 · 이춘석

양부남 • 백혜련 • 위성곤

추미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인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데,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그 밖의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씩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을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또는 「지방대학 및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인근로자"로, "400만원"을 "450만원"으로, "800만원"을 "850만원"으로, "1,45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	
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u>2025년</u>	<u>2027년</u>
<u>12월 31일</u> 이 속하는 과세연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	
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	
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1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u>60세 이상인 근로자,</u>
<u>또는 경력단절 여성</u> 등 대통	경력단절 여성 또는 「지방

명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 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 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 원)]을 곱한 금액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인 근
로자
<u>450만원</u>
<u>850만원</u> -
1천50
0만원
<u>1천650만원</u>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 2. (생략)
- ② ~ ⑧ (생 략)